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법주

충청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황영호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4년 11월 13일

나. 회부일자 : 2024년 11월 15일

3. 제안이유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도내 대중교통의 체계적인 구축·운영 및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의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다. 대중교통기본계획 의견 제시(안 제4조)

라.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의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안 제5조)

마.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안 제6조)

바. 대중교통 이용 권장(안 제7조)

5. 검토내용

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

- 충북도의회의 『충북 대중교통 운영현황 조사 및 발전방향 연구 용역 결과보고서(2023)』(64~67면, 75~89면, 141~146면)상 충북 지역 대중교통의 주된 문제점으로 대중교통수단 선택지 부족, 지역별 대중교통 연결 및 환승의 불편, 환경친화적 교통수단 부재 등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확인됨.

- 본 조례안은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대중교통의 이용 편의를 위한 서비스 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충북의 대중교통 관련된 기 조례인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에 국한되어 있고,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는 일반 도민이 아닌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본 조례안과 같이 전반적인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및 이용 촉진을 위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여전히 그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현재 충북에서 진행 중인 저상버스 도입 보조, 벽지 노선 손실보상 사업 등은 본 조례안이 성안됨으로써 해당 시책을 규범화한다는 측면에서 실효성이 인정됨.

< 참 고 >

※ 우리 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 시·도 중 8개 시·도(경기, 서울, 부산, 세종, 충남, 대구, 경북, 인천)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임

지역	조례명	제정일
1 경기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2013-06-05
2 서울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2015-01-02
3 부산	부산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2016-01-01
4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2016-12-20
5 충남	충청남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2019-05-30
6 대구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2020-12-10
7 경북	경상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2021-07-15
8 인천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2024-03-28

나. 조례 내용의 법 적합성

- 「대한민국헌법」 제117조 및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이라 함)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장비의 확충 및 지원의 강화, 광역적인 대중교통 서비스의 개선,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의 편의 증진 등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함. 또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저상버스 또는 2층전기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개선, 전국 호환 교통카드의 설치·운영 등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필요한 소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

- 상위법령상 별도의 조례 위임사항은 없으나 자치조례로 지역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규범적으로 문제가 없음.

다. 조례 내용의 타당성

- 본 조례안은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5조	대중교통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예방
제2조	정의	제6조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7조	대중교통 이용권장
제4조	대중교통기본계획 의견제시	부 칙	

- 조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중교통”과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뜻을 규정함. 해당 용어의 내용은 대중교통법상의 용어 정의를 따른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3조는 도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열거하고 있는 각호의 정책 사항은 대중교통법 제3조에 의거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 육성·지원 책무 내용에 부합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내용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4조는 대중교통법 제5조에 따라 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중교통 기본계획(법정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 관계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5조는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보건위생 증진 방안 및 감염병 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 안 제6조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7조는 대중교통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도민 스스로 대중교통 이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
- 그밖에 조문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조문 상호 간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함.
- 조례안 예고('24. 11. 19. ~ '24. 11. 25.)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내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여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가 바람직하고, 충북 지역의 지리적·환경적 여건과 상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고려하여 우리도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문이 구성되어 일응 타당하다는 판단임.
- 그밖에 절차적인 면에서 집행부 협의를 거쳤으며 조례안 예고 결과 달리 제출된 의견이 없는 등 조례 제정 입법 절차를 준수하였는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 본 조례안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정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책무, 대중교통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 대책 마련 의무,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등의 근거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향상 도모는 물론 대중교통체계 효율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본 조례안 제정 이후 실제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도내 현안을 반영한 대중교통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과 이행이 가능하도록 상위 대중교통 기본계획 및 시·군 지방대중교통 계획과의 원활한 도정 연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됨.